

## 〈 구비서류 검토 시 유의사항 〉

대상별 분류	구비서류	유의사항	
전체 신청자 구비서류 (필수)	특별공급 신청서류 (공지붙임)	1. 특별공급 신청서	주민센터 1차, 자치구 2차 검토
		2.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3. 개인정보 동의서	
		4. 무주택 서약서	
	5.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원 수 확인용	
	6. 주민등록표초본	서울시 최종 전입일 확인용	
	7.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관계 확인용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b>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b> (배우자의 세대원 수 확인)도 필수 제출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대구성원 <b>전원</b> (미성년자 포함)의 <b>10년간</b> , '전국' 단위로 조회 -재산세(주택) 항목 확인용(무주택자인지 확인) -세대원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만 포함(형제자매 등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징구하지 않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위임할 경우 위임장, 위임한 자의 신분증 지참해야 함.]	
해당자 구비서류 (해당될 경우 필수)	1. 특별공급신청서류(공지 붙임) 中 위임장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위임할 경우 필수 (인감증명서 등은 불필요)	
	2.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재산세(주택분) 납부자의 경우 필수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 서만 제출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확인용(마지막 주택 매각일자 확인) -주택이 아니거나 이미 멸실되었다는 등 무주택으로 볼 사유 가 있는 경우 입증서류 필수(예 : <b>건축물 멸실신고서</b> 등) -건물이 있고, 건물의 용도가 주택(또는 거주용)이며, 현재 건 물 소유주가 신청자 또는 세대구성원이면 유주택 세대로 봄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 건물의 용도 파악이 어려울 경우, <b>건축물관리대장</b> 을 추가로 징구할 수 있음 -주택을 매각한 경우, 매각일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포기자 구비서류	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 <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작성요령 >

### 1.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 ①,②,③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

- ① 최초 장애등록일 이후 (장애인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장애 취소 후 재등록한 장애인의 경우 '재등록일' 이후)
- ② 신청자가 만19세가 된 이후 (만19세 이후부터 청약자격이 발생하므로)
- ③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가 된 이후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세대구성원이 그 주택을 매도한 이후를 말함)
  - ※ 장애인의 직계존속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만60세가 넘은 경우 그때부터 무주택자로 간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예시1) 장애등록을 8세 때 하였고, 현재 30세이며, 세대구성원 전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 장애인이 만19세가 넘은 시점부터 계산

예시2) 장애등록을 8세 때 하였고, 현재 30세이며, 유주택자인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아버지는 65세)

→ 장애인의 직계존속은 만60세가 넘은 시점부터 무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신청 가능. 단, 아버지가 만60세가 넘은 시점부터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으로 인정

예시3) 장애등록을 8세 때 하였고, 현재 30세이며, 유주택자인 아버지와 같이 살다가 세대분리하여 현재는 단독가구인 경우

→ 장애인이 만19세가 넘은 시점부터 계산(만약, 장애인 본인 명의로 집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그 집을 판 시점부터 계산)

※참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15.2.27.)으로 신청자격이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완화(장애인이 세대주이든 세대원이든 상관없이 신청 가능)

2.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 신청자 제외

3.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 신청자 제외

4. 세대원 구성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수(신청자 포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직계가족이 아닌 형제자매는 불포함, 이모·고모 등의 친척도 불포함

5. 서울시 거주기간 : 신청자의 장애등록시점(장애 취소 후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시점)부터 산정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만 19세 이후의 기간만 산입). 타 지역에서 이주한 경우 '최종' 서울시 전 입일로부터 산정